

평창군읍·면자치위원회조례안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9월 일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개발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"평창군 읍면개발위원회조례"를 폐지하고 "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"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심의사항 (안제2조)

-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
- 주민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
-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
-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

나. 구성 (안제3조)

-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~30명내외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바. 조례·규칙심의회 : 제15회 평창군조례·규칙심의회('99.8.13)원안의결

평창군읍·면자치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지역사회 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·면행정
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
여 읍·면에 자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당해 읍·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
한다.

1.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
2. 주민의 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
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교육문제 및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
4.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
5.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
6.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
7.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
8.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·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~30명내외
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선임)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·면장이 위촉한다.

1.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
2.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.
- ③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- ②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.
- ③정기회와 임시회는 읍·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임시회의는 읍·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.

제7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·면장이 읍·면행정예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·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.

-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.

제9조(실비변상) 평창군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조례(조례 제
71호, 1964. 8. 7)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읍면개발위원은
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